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48
----------	-----

제출년월일 : 2020. 0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는 평창군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수, 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 나.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139개)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출범(의료보험 완전통합)으로 부칙<제5854호, 1999. 2. 8.>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라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각각 폐지되어 「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지역의료보험지원을위한조례」는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0. 04. 01.~2020. 04. 21.)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중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法人的 理事 기타 任員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5조 (적용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有功者等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配偶者의 直系卑屬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직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大統領令이 정하는 日用勤勞者등을 제외한다)와 그 사용자

2.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사(短期服務者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과장 고흥재
연락처	(033) 330 - 2311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